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순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2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8. 24.

발의자 : 김순례 · 김성원 · 주광덕
염동열 · 정유섭 · 장석춘
이종명 · 안상수 · 신상진
원유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발달장애인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지적장애인과 자폐증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폐성장애인 등으로서 현행법은 이들의 발달 재활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발달장애인은 그 특성상 성범죄와 성추행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그 피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가 많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 대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0조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교육”을 “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교육실시에”를 “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”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와 <u>교육의 내용과 방법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<u>교육실시</u>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.</p>	<p>제30조(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③ ----- -----<u>교육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교육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----- -----<u>교육 및 제2항에 따른 성교육의 실시에</u>----- ----- -----.</p>